PSM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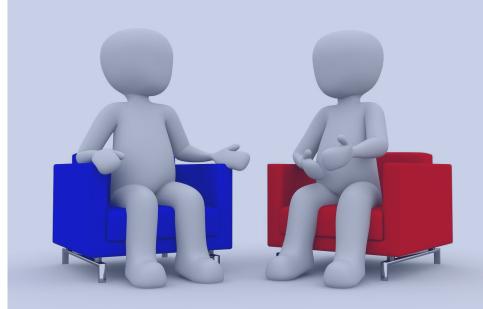




목차

멂

- 1. 개요
- 2. PSM 평가 및 점검 주기
- 3. PSM 12대 요소
- 4. 공정안전자료
- 5. 위험성 평가
- 6. 안전운전지침
- 7. 설비 유지관리(점검, 유지, 보수)
- 8. 협력업체 안전관리
- 9. 안전작업허가 지침
- 10. 변경관리 지침
- 11. 가동전 점검지침
- 12. 근로자 교육계획
- 13. 자체감사 계획
- 14. 공정사고조사 계획
- 15. 비상조치계획



1. 개요



PSM 이행실태점검과 이행상태평가 대응

-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상태평가 차이점 ?
 - 점검은 가능하면 보여주지 않고자 함
 - 평가는 가능하면 보여주고자 함
- 점검과 평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?
 - 전직원의 관심
 - 시스템의 숙지 정도
 - 상황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
- ☞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1. 개요

구분	위반조항		OI HLI II O			
	법	규칙	위반내용	과태료/벌금/사법처리		
PSM	제49조의2 1항	-	공정안전보고서 제출/승인 적합승인 전 설비가동	3백/6백/1천만원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		
	제49조의2 7항	-	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이행 (안전작업허가 미실시 등)	1십/2십/3십만원 과태료(1천만원 이하		
	제49조의2 8항	-	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변경관리 미실시 (변경 후 보고서 UP-DATE 미실시 등)	1업/2업/3업인된 파네표(1신인된 이야)		
일반 안전	제23조 1~3항 (안전상의 조치)	261조 266조 267조	안전밸브 미설치 안전밸브 토출테스트 미설치 안전밸브 부적절 설치 안전밸브 토출라인 미흡	근로자사망 시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	
		230조 1항	폭발위험장소 미설정	위반 시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	
		311조 1항, 2항	비방폭 전기기구 사용 방폭시공 부적절	▶ 검찰/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며 부과		
		232조 2항	가연성 가스 감지 경보기 미설치	- 양벌 규정 : 개인, 법인 - 사안에 따라 금액결정		
		227조	배관 주입구 체결 불량	- 시간에 뛰니 급극결정		
		325조 1항	정전기 제거조치 미흡			

2. PSM 평가 및 점검 주기



이행상태 평가

정기 평가	4년마다 정기적 실시
신규 평가	신규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완료 후 1년 후 2년 이내 실시
재평가	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재평가 신청 시 6개월 이내 실시

- ※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등급을 강등하고, 1년간 재평가 금지
- ※ 평가대상 사업장 주 점검주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급적 평가 및 점검을 동시에 진행

이행상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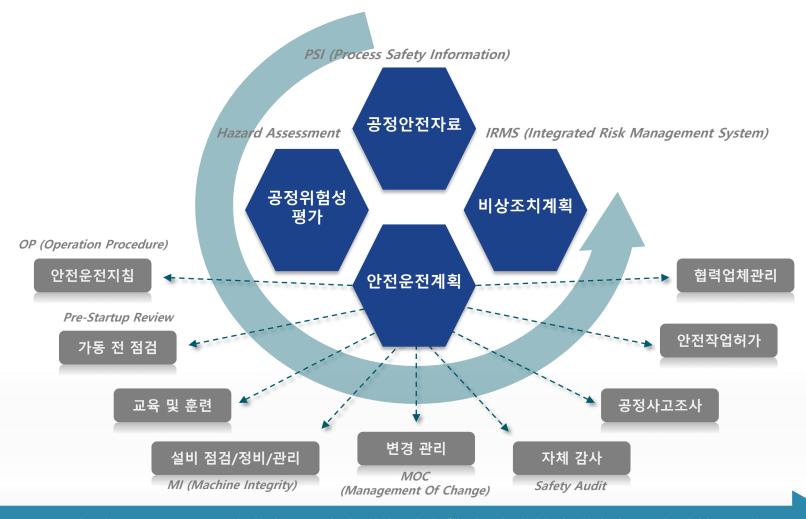
구분	일반기준	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		
P등급	등급부여 후 1회/4년 점검			
S등급	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			
M+등급	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 및 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 팀)	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		
M-등급	등급부여 후 3회/4년 점검 및 1회/2년 기술지도(기술지원 팀)	등급부여 후 1회/2년 점검 및 1회/4년 기술지도(기술지원팀)		

※ 기술지도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경우(서면 신청)에만 실시(가급적 점검 시기의 ±6월 이내에는 금지)하되, 일반기준 M±등급은 4년(평가주기)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

※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+등급에 준하여 관리

3. PSM 12대 요소



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64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.심사.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: 제3장 보고서 작성 기준 → 제4절 안전운전 계획, 제5절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포함되어야 함.



□ 공정안전자료란?

- ●공정안전관리(PSM)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
-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MSDS, 각종 도면, 설비 목록 및 사양, 설계기준 등을 말함

□ 공정안전자료 세부항목

-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 : Material Safety Data Sheet)
- 각종 도면(PFD, P&ID, 방폭도면, 전기단선도 등)
- 설비 목록 및 사양(동력기계, 압력용기, PSV 등)
- 건물/설비 배치도 및 각종 소방, 안전설비 설치현황(소화설비, 화재탐지/경보설비, 가스감지기, 비상샤워기 등)
- 설계, 제작 및 설치기준
- 기타 Flare Stack, 환경오염물질 처리설비 현황 등
- ※ 공정안전자료는 PSM 보고서를 이용하여 관리함

4. 공정안전자료



- 공정안전자료는 항상 현장과 일치토록 Up-date 관리
- 운전자실에 Lay-Out, PFD, P&ID, 방폭 도면을 비치해야 함
- 취급물질에 대한 MSDS 이해 (인화점, 발화점, 독성 등)
- MSDS 비치 및 관련자 교육 실시 (변경 시 교육실시 2hr이상)
- PSM 보고서 회람 후 싸인(교육결과보고서 활용)
- 안전밸브 POPING TEST(1년 1회-결과보고서 작성)
- 가스감지기 점검 및 교정(1년1회-점검 및 교정 리스트 작성)
- 접지저항측정(1년 1회 이상 측정) 결과보고서 작성

5. 위험성평가



□ 공정 위험성평가란?

신규공정 및 기존공정의 잠재적인 위험성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법

□ 공정 위험성평가 방법

- HAZOP Study (정성적 평가기법)
- 체크리스트 (정성적 평가기법)
- 피해범위 분석 (정량적 평가기법)
- ※ 신·증설공정, 위험성평가를 최초 실시하는 기존공정, 주요 설비 및 구조 변경일 경우 Hazop과 같은 완전한 평가기법 을 선정하고 설비중 저장탱크, Utility 및 정압기실등 간단한 공정에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간단한 기법을 적용한다.
- ※ HAZOP은 <u>HAZ</u>ard & <u>Op</u>erability Study의 약어로 운전, 설계, 기술, 정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P&ID를 이용하여 위험성을 검토하는 기법임

5. 위험성평가

모

□ 작업 위험성평가란?

당사의 작업을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방법

- □ 작업 위험성평가 방법
 - 작업안전성분석(JSA)
 - K-RAS 등
- □ 작업 위험성평가 양식 예시

71.01.51		작업번호		개정일자	
작 업 명		작 성 자		작성일자	
부서 명		검 토 자		검토일자	
작업지역		승 인 자		승인일자	
필요한 보호구	(예) 안전화, 안전모, 방독마스크, 보안경, 송기마스크 등				
필요한 장비/공구	(예) 지게차, 체인블록 등				
필요한 자료	(예) 작업계획서, 작업허가서, MSDS, 도면(P&ID, 전기단선도) 등				
필요한 안전장비	(예) 가스감지기, 소화기 등				

번호	작업단계 (Steps)	유해위험요인 (Hazards)	대책 (Controls)	조치일정	담당

- 1. 정기적 위험성평가 실시
- ▶ 신규작성 후 위험성평가를 포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Revision하여야 함.
- ▶ 공정 위험성평가 :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 후 4년마다 검토, 확인 (변경사항 있을 경우 재실시)
- ▶ 작업 위험성평가 : 최초평가 후 정기평가는 매년 실시한다.
- 2. 주요 장치 / 설비 변경 시 위험성평가 (HAZOP) 실시
- 3. HAZOP 결과 개선권고사항 Follow-up
- 4. HAZOP 결과에 대한 소속 근로자 교육 실시
 - → 순차별로 교육실시하고 결과물 확보

6. 안전운전지침



□취지

설비 및 공정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각 운전 단계별로 필요한 안전운전 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함으로써, 안전운전을 하기 위함

□ 안전운전절차 필수 포함사항

- 1. 안전운전절차에는 최초의 시운전절차,정상운전,비상시운전, 정상적인 운전정지, 비상정지, 정비 후 운전개시 등 각 운전 단계별로 작성
- 2.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
- 1)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대한 조치 절차
- 2) 취급하는 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
- 3) 유해위험물질 누출 예방조치 방법
- 4) 개인보호구 착용방법
- 5) 위험물질에 폭로 시 조치방법
- 6) 안전설비계통의 기능, 운전방법 및 절차

6. 안전운전지침



- 1. 안전운전절차 작성을 위한 지침
- 2. PSM대상 공정/설비 포함: SOP 목록표 작성관리
- 3. PSM 고시에서 요구하는 12개항목(정상운전,...)
- 4. 변경관리에 따른 검토
- 5. 매년 책임자(경영층)의 검토/확인
- 6. INTERLOCK BY-PASS 지침: 실적일지
- 7. 현장비치 및 교육

7. 설비 유지관리(점검, 유지, 보수)



□ 취 지

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제반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, 제작, 검수, 점검, 검사 및 정비기준을 정하여 관리함으로 장치/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

□ 관리기준

- 1. 설비에 대한 점검, 검사, 정비기준/절차의 제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- 2. 설비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점검,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행
- 3. 점검, 검사, 정비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및 분석에 따른 예방정비에 활용
- 4. 점검 및 검사 후 이상유무 판정 및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
- 5. 신규 설비가 설계 및 제작기준과 일치 여부 확인
- 6. 주요 설비에 대한 예비품(Spare Part) 확보

□ PSM 적용

- 1. 예방보전 매뉴얼, 전산관리시스템 설명서
- 2. 설비등급구분기준, 평가표, 등급별 차등: 점검주기
- 3. 변경(관리)된 설비의 UP-DATE
- 4. 전년도/당해년도 예방보전계획서: 항목/시간
- 5. 해당 점검에 대한 결과: 점검표, 일지
- 6. 기기번호일치: PSM보고서 등재번호 = 관리번호
- 7. 예비품목록표(안전재고/현재재고)

8. 협력업체 안전관리



□ 취 지

도급업체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고, 도급업체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제반 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

※ 도급업체 : 공사업체 (상주 및 비 상주업체) + 협력업체(?)

■ PSM 적용

- 1. 도급업체: 공정설비 보수, 개선, 정비 수행
- 2. 사내협력업체 안전관리
- 3. 공사성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/승인
- 4. 도급(공사)업체 평가: 벌점부가제도
- 5. 물질의 누출, 화재, 폭발사고에 대한 위험성 교육
- 6. 비상대응/대피훈련에 대한 교육 및 참여유도
- 7. 도급업체 안전교육일지 제출 받아 검토 및 지도

□ 참고사항

1. 도급업체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 (신규 출입자, 정기, 특별안전교육 등)

9. 안전작업허가 지침



□취지

공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

□ 작업허가서의 종류

- 1. 일반작업허가
- 2. 화기작업허가
- 3. 밀폐공간작업 허가
- 4. 전기작업 허가
- 5. 고소작업 허가
- 6. 굴착작업 허가
- 7. 중장비작업 허가
- 8. 방사선작업 허가

9. 안전작업허가 지침



- 1. 모든 작업에 대한 사전허가 후 작업
- 2. 작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구분
- 3. 허가서상의 확인사항 및 승인결재부분 누락방지
- 4. 가스측정 결과기록: 휴대용 측정기 비치 및 사용숙달
- 5. 업체 반입장비에 대한 점검
- 6. 작업자(도급업체) 교육: 필요한 보호구 명기
- 7. 제한공관 관리절차 도입
- 8. 위험꼬리표 관리절차 도입

10. 변경관리 지침



□ 변경관리란?

시설, 공정, 취급물질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시 관련 전문가의 사전 위험성 검토를 통해 잠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임

□ 변경관리 절차(요약)

- 1. 변경요청
- 2. 설계 및 공정안전자료 확보 및 수정 (제작도면, PFD, P&ID, 방폭도면 등)
- 3. 위험성평가 / 기술 검토
- 4. 변경공사 수행
- 5. 운전절차 제,개정 및 교육훈련
- 6. 가동전 안전점검

10. 변경관리 지침



- 1. 변경관리목록표
- 2. 내부품위/기술검토 회의록
- 3. 공정안전자료 작성
- 4. 위험성평가
- 5. 실질적인 가동전 점검표
- 6. PUNCH LIST 및 보완결과물
- 7. 안전운전절차 제/개정
- 8. 변경관리내용에 대한 교육
- 9. 변경관리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UP-DATE: 분기별

□ 점검내용

- 1. 설계/제작 기준대로 설치여부
- 2. 규정된 검사 실시 및 합격여부
- 3. P&ID 등 공정안전자료 확보 및 Up-date 여부
- 4.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절차 확보여부
- 5. 점검, 정비, 검사에 필요한 절차 확보여부
- 6.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여부
- 7. 비상대응 절차 및 설비/장비의 확보여부
- 8. 위험성평가 결과(개선항목)의 완료여부

□ PSM 적용

- 1. 가동 전 점검표
- 2. 가동전 점검팀 구성 및 확인
- 3. 개선사항(PUNCH LIST) 및 조치완료 결과
- 4. 변경관리서류와 함께 관리

12. 근로자 교육계획



□취지

공정운전, 설계, 정비, 검사, 비상대응 등 각 분야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훈련을 실시

□ PSM 교육 훈련 요건

- 1. PSM에 대한 교육 실시(1회/년)1회/년 능력배양교육 실시(외부강사 초빙)
- 2. 법적인 안전교육 실시 (신입사원,정기교육,특별안전교, 작업변경시(MSDS포함) 교육 등)
- 3. 각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(운전, 공무 등)
- 4. 도급업체 안전교육(신규, 정기, 특별안전교육 등)

12. 근로자 교육계획



- 1. 전년도/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서
- 2. 법적인 안전보건교육
- 3. PSM 전문교육
- 4. 위험성평가 교육
- 5. 비상대응/대피 훈련
- 6. 교육평가결과 및 관리
- 7. PSM 관련 내부자격 기준 및 관리
- 8. PSM 12개요소 중 필요한 모든 교육/훈련 일지

□ 취 지

PSM 12개 구성요소가 규정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공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

□ PSM 적용

- 1. 자체감사 계획서 및 보고
- 2. 자체감사원 자격관리
- 3. 자체감사 결과보고서
- 4. 정량적인 목표 및 결과관리
- 5. 부서별 시정지시서 및 조치완료결과물
- 6. 자체감사결과 포함 교육
- ※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PSM 담당자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(자체감사 시정요구서 발급 시정결과 참고)

□ 취 지

안전사고 및 공정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동종사고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

□ 사고보고 및 조사대상

- 인체상해사고
- ▶ 화재/폭발사고
- ▶ 환경, 차량사고
- > 공정사고
- > 아차사고

- 1. 공정사고 정의: 누출, 화재, 폭발
- 2. 공정이상에 대한 정량적 범위: 손실액
- 3. 사고조사착수시점 기록
- 4. 사고조사팀 기록
- 5. 아차사고 발굴, 관리목록
- 6. 사고보고서의 재발방지대책 완료결과
- 7. 사고보고서에 대한 교육

□ 취 지

사업장에서 화재, 폭발,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어진 물적/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

- □ 비상사태의 종류 및 비상경보
 - ※ 비상방송 설비를 이용하여 비상사태의 내용 및 행동요령대한 구체적 안내
- □ PSM 준수사항
 - 1. 각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대응 조직, 절차, 계획 수립
 - ▶ 환경안전팀에서 총괄 비상사태 조치
 - ▶ 각 팀별 비상시 대응절차
 - ▶ 각 팀별 사고 시나리오
 - 2. 비상조치계획은 항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
 - 3. 비상대응 관련 개인별 임무 숙지
 - 4. 비상대응 설비 및 장비의 확보, 작동검사 및 유지관리
 - ▶ 화재진압장비 점검 LIST, 착용법 등
 - 5. 비상사태 별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정기적 훈련 실시 및 실시기록 유지
 - 6. 비상대피로 부착 및 훈련 실적
 - 7. 공정설비 비상정지 대응 훈련 실적

15. 비상조치계획



- 1. 구체적인 비상사고시나리오 작성: 목록표 관리
- 2. 비상대응 시 구체적인 담당자 지정
- 3. 사고피해예측 결과 반영
- 4. 비상사태 시 피해범위 내 업무협조/경보통보
- 5. 비상대응/대피훈련 결과
- 6. 비상대피로경로도 및 비상집결지 명판설치

감사합니다.

Q&A